사무분장 규정

2009. 12. 01. 최초제정 2017. 02. 01. 부분개정 2022. 09. 01. 부분개정 2025. 05. 01. 부분개정
2010. 12. 01. 부분개정 2017. 06. 15. 부분개정 2022. 09. 21. 부분개정 2025. 08. 01. 부분개정
2011. 09. 01. 부분개정 2017. 11. 01. 부분개정 2023. 01. 01. 부분개정 2025. 09. 01. 부분개정
2011. 12. 12. 부분개정 2018. 04. 01. 부분개정 2023. 04. 01. 부분개정 2025. 12. 01. 부분개정
2012. 03. 01. 부분개정 2018. 08. 15. 부분개정 2023. 05. 01. 부분개정 2026. 03. 13. 부분개정
2012. 06. 01. 부분개정 2019. 04. 01. 부분개정 2023. 08. 01. 부분개정 2026. 04. 01. 부분개정
2012. 09. 01. 부분개정 2019. 08. 09. 부분개정 2023. 09. 01. 부분개정 2026. 06. 08. 부분개정
2013. 09. 01. 부분개정 2019. 10. 01. 부분개정 2023. 10. 01. 부분개정 2026. 06. 22. 부분개정
2014. 07. 01. 부분개정 2019. 10. 15. 부분개정 2024. 03. 01. 부분개정 2026. 09. 07. 부분개정
2016. 01. 01. 부분개정 2020. 03. 01. 부분개정 2024. 05. 01. 부분개정 2026. 10. 19. 부분개정
2016. 04. 01. 전면개정 2020. 09. 01. 부분개정 2024. 10. 01. 전면개정 2026. 11. 16. 부분개정
2016. 07. 01. 전면개정 2021. 09. 01. 부분개정 2024. 11. 08. 부분개정
2016. 11. 01. 부분개정 2021. 11. 01. 전면개정 2024. 12. 23. 부분개정
2016. 12. 20. 부분개정 2022. 04. 01. 부분개정 2025. 03.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직제규정 제4조(사무분장)에 따라 조직과 직무에 관하여 각 부서별 업무분장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부서 간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본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통 업무

제2조(공통 업무)

1. 부서 발전계획 및 연간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2. 해당 사무의 통계에 관한 사항
3. 소관 규정의 제·개정(안)작성 및 발의 업무
4. 부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문서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직인관리부서)
6.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청렴감사실

청렴감사실의 사무는 실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팀원은 실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청렴감사실) 청렴감사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대학 내·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2. 인사, 복무, 회계, 계약에 대한 법리적 해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총장의 요청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대학 내·외부 민원 및 제보, 감사요청 관련 사항
5.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에 관한 사항

제4장 삭제 <2024.11.08.>

제4조 삭제 <2024.11.08.>
제5조 삭제 <2024.11.08.>

제5장 기획처<개정 2024.10.01.>

기획처의 사무는 처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센터장, 팀장, 팀원은 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기획팀) 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대학 중장기 발전 및 경영성과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전략기획업무와 조직 성과관리
4. 직제 및 조직의 신설·조정의 발의에 관한 사항
5. 학과의 신설/폐지/명칭변경/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6. 캠퍼스 마스터플랜 기획 및 신·증(개)축에 관한 사항
7.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
9. 교육용재산 관리(인허가 포함)에 관한 사항
10.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대학의 중·단기/장기 재정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자금예치에 관한 사항
13. 교육원가에 관한 사항
14. 예산운영(별도법인포함)에 관한 사항
15. 등록금 책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6.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대학 계약에 관한 사항(500만원 이상의 공사 계약)
18. 삭제 <2025.08.01.>
19. 교수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6.04.01.>
21. 교원의 정원관리와 직군설폐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23.>
22.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23.>
23. 교원 업적(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23.>
24. (전임)교원의 연봉책정 및 산정, 계약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23.>
25. 교원확보율 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4.12.23.>

26. 교원퇴임식에 관한 사항<신설 2025.03.01.>

제6조의2(대학성과·IR센터) 대학성과·IR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대학 자체평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관한 사항
2.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 관한 사항
3.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에 관한 사항
4. 학문분야평가(간호교육인증, 작업치료교육인증, 세계작업치료사인증,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학성과 관리를 위한 지표 수립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평가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11.08.]

제6조의3(지역사회협력센터) 지역사회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지·산·학·관 등 협력기관 대상 협력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협력기관 종합관리 및 교류연계(행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및 산업체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 산업체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협력 관련 연구소 설·폐에 관한 사항
7. 기부금(기금) 유치, 관리 및 기부자 예우,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협력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09.01.]

제7조(대학정보관리팀) 대학정보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개정 2024.11.08.>

1. 정보화 중장기전략 수립, 집행, 평가 등 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개발, 보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10.19.>
4. 네트워크 통신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서버관리, 정보데이터관리 및 백업에 관한 사항
6. 공용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08.01.>
7. 삭제 <2026.10.19.>
8.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정보보호팀) 정보보호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정보보안 운영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 운영 및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10.19.]

제6장 교무처

교무처의 사무는 처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센터장, 팀장, 팀원은 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교무팀) 교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
2.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행사에 관한 사항(학위수여식/총장이・취임식/이사장이・취임식/시무식/종무식 등)<개정 2025.03.01.>
4. (비전임)교원인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23.>
5. 삭제 <2024.12.23.>
6.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성적, 졸업, 학점인정, 휴/복학, 제적, 편입, 전과, 재입학, 학위유예 등)<개정 2025.05.01.>
7. 학사일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교과배정에 관한 사항(전문학사(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
9.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휴/보강, 출결, 수강신청, 강의평가 등)<개정 2025.05.01.>
10. 평가(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12. 고등교육통계 및 정보공시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원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
14. 교내 연구 관리에 관한 사항
15.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요람(국문, 영문)의 발간에 관한 사항
17. 대학 연혁관리에 관한 사항
18. 제위원회 설치 및 관리,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9.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20. 부서장 회의에 관한 사항
21. 의전에 관한 사항
22. 국가(면허)시험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
23.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24. 스쿨제 운영에 필요한 학사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03.13.>
25. 삭제 <2024.12.23.>
26. (비전임)교원의 연봉 책정 및 산정, 계약에 관한 사항<개정 2024.12.23.>
27.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학사학위센터) 학사학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인가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 후 운영여건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질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8.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진단에 관한 사항
9.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관한 사항

제10조 삭제 <2025.05.01.>

제11조(직업교육혁신센터) 직업교육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개정 2025.03.01.>

1.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 및 추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에 관한 사항
3.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 지원
5. 역량기반 교육과정 교육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6. 학습성과 평가 인증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역량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5.08.01.>
9.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08.01.>
10. 기초학습능력진단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08.01.>
11. 삭제 <2025.08.01.>
12. 삭제 <2025.08.01.>
13. 삭제 <2025.08.01.>
14. 삭제 <2025.08.01.>
15. 삭제 <2025.08.01.>
16. 삭제 <2025.03.01.>
17. 삭제 <2025.03.01.>
18. 삭제 <2025.03.01.>
19. 삭제 <2025.08.01.>
20. 삭제 <2025.03.01.>
21. 삭제 <2025.03.01.>
22. 기타 직업교육혁신 관련 업무 사항

제11조의2(직업교육콘텐츠연구센터) 직업교육콘텐츠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신설 2025.08.01.>

1. 직업교육콘텐츠 개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스마트 L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수(강사 제외)의 교수-학습능력 개발 및 교수학습방법개선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수(강사 제외)의 수업개선 및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수(강사 제외)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세미나, 워크숍 개최에 관한 사항

7. 전체교직원 연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생의 학습능력신장 및 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학습코칭, 다양한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초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센터의 목적수행에 부합되는 대내외적 사업의 계획과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제12조(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현장실습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지원 및 조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실습기관 발굴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실습기관 수요조사 및 참여 신청, 접수 관리
5. 현장실습 학생참여 신청, 접수 관리
6. 학생대상 현장실습 사전교육 및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
7. 현장실습 결과에 대한 학생평가 및 학점인정 관리에 관한 사항
8. 현장실습 운영 자료 관리 및 수행 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 현장실습 사무의 통계에 관한 사항
10. 캡스톤디자인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학생・취업처

학생・취업처의 사무는 처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센터장, 팀장, 팀원은 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학생팀) 학생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유치, 지급(교내, 교외, 국가장학 등)에 관한 사항
2.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행사(신입생OT, 체육대회, 축제, 학과MT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총학생회장·부회장 선거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단체(총학생회. 대의원회 및 일반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건전대학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내·외 학생복지시설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학생 지원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9. 학생회비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졸업준비위원회(앨범제작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생활동 및 경영자배상 책임보험 지원에 관한사항
13. 학생행사 및 게시 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
14. 학생증 발급에 관한 사항

15. 체력단력실(학생 및 교직원 체력 향상) 관리에 관한 사항
16. 건강관리실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17. 스쿨제 운영에 필요한 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03.13.>

제14조(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건강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심리상담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강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의료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취업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개정 2025.09.01., 2025.12.01.>

1. 삭제 <2025.09.01.>
2. 삭제 <2025.09.01.>
3. 삭제 <2025.09.01.>
4. 삭제 <2025.09.01.>
5. 삭제 <2025.09.01.>
6. 삭제 <2025.09.01.>
7. 삭제 <2025.09.01.>
8. 취업·진로 지원 전략 수립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01.>
9. 자격증 취득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취업·진로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01.>
11. 취업·진로 정보제공 및 추천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01.>
12. 취업 전산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3. 취업기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4. 취업·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01.>
15. WHCR(취업인증)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취업 관련 정부 및 외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01.>
17. 취업·진로지도 이력 및 D/B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8. 진로·취업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5.09.01.,2025.12.01.>
19. 스쿨제 기반 진로 및 취업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03.13.>
20. 삭제 <2025.09.01.>
21. 삭제 <2025.09.01.>

제15조의2(직업이음센터) 직업이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소외계층·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업이음 및 취약계층 관리에 관한 사항
3. 서로이음·온이음·다시이음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직업이음 관련 정부 및 외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서로이음·온이음·다시이음 D/B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6. 직업이음센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09.07.]

제16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국내·외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종 대내·외 대학생 자원봉사 공모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관련 수요처와의 협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백서 발간 및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제17조(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제18조(예비군대대) 예비군대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자원종합 관리(편성카드/보류자/출·귀국자/전투편성/전·출입/신상변동)에 관한 사항
2.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병력동원에 관한 사항
4. 향방동원에 관한 사항
5. 체계관리업무(코드관리, 메일발송, 질의응답, 게시판, 통지서작성 등)
6. 대학직장민방위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7. 직장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8장 입학처

입학처의 사무는 처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팀장, 팀원은 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19조(입학·홍보팀) 입학·홍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입학전형 정책 반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원서접수에 관한 사항
4. 입학시험(면접 등)에 관한 사항
5. 신상대조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6. 합격인원 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7. 신입생 등록관리(환불, 최종마감 포함)에 관한 사항
8. 추가합격자 충원에 관한 사항
9. 연장모집에 관한 사항
10. 지원방법 위반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6.06.08.>
1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모집 및 입시에 관한 사항
13. 편입학생 모집 및 입시에 관한 사항

14. 입학 관련 홍보(스승의 날 편지쓰기, 모교방문 등)에 관한 사항
15. 입학홍보 기념품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진로체험에 관한 사항
17. 입시 관련 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장·단기 홍보(대학·입학) 계획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19. 대학·입학 홍보(교내·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0. 대학 상징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언론 및 매스컴 보도·관리에 관한 사항
22. 교내 행사의 촬영 및 관련 자료보존에 관한 사항
23. 신문·방송국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홍보대사 선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5. 대학·입학관련 광고에 관한 사항(TV, 라디오, 신문, 잡지, 옥외광고 등)
26. 대학·입학 홍보 인쇄물 제작에 관한 사항
27. 홍보 기념품 제작 및 배포·관리에 관한 사항
28. 온라인(블로그, SNS, 유튜브)/오프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29. 대학·입학 관련 각종 공모·대회·행사에 관한 사항
30. 알림게시판(전광판, 현수막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1. 홈페이지 개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2. 스쿨제 운영에 필요한 입시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6.03.13.>
33. 삭제 <2024.11.08.>
34. 삭제 <2024.11.08.>
35. 삭제 <2024.11.08.>
36. 삭제 <2024.11.08.>
37. 삭제 <2024.11.08.>
38. 삭제 <2024.11.08.>
39. 삭제 <2024.11.08.>
40. 삭제 <2024.11.08.>
41. 삭제 <2024.11.08.>
42. 삭제 <2024.11.08.>
43. 삭제 <2024.11.08.>
44. 입학식에 관한 사항<신설 2025.03.01.>
45. 기타 대학 홍보 관련 업무 사항<신설 2025.03.01.>

제19조의2 삭제 <2025.03.01.>

제9장 사무처

사무처의 사무는 처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팀장, 팀원은 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총무팀)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문서 관리(생성, 통제, 접수, 분류, 보존,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무의 보안업무, 전시비상계획,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총장 직인관리(민원용 교무처 및 각종 위원회 직인은 제외)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 요청의 대응에 관한 사항
5. 대학 내 우편취급 업무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복무관리(근무시간 변경, 직원 동원, 초과근무 등)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8. 각종 행사(개교기념일, 직원퇴임식, 체육 대회 등)에 관한 사항
9. 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전체 교직원 연수 지원)
10. 결산에 관한 사항
11. 세입・세출금 관리(세입・세출 외 현금 포함)
12. 경리관련 제반증빙서 관리
13. 회계일반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직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15. 등록금 수납에 관한 사항
16. 교직원 출장 여비 결의에 관한 사항
17.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18.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 등에 관한 사항
19. 교직원 제 증명서(재직/경력/갑근세/원천징수/지급조서 등) 발급에 관한 사항
20. 계약에 관한 사항<개정 2025.08.01.>
21. 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교육, 행정, 전산, 시설)에 관한 사항
22. 실험・실습용품 및 일반소모품의 관리와 구매결정에 관한 사항
23. 행정부서의 일반용품 및 소모품 구매 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
24. 구매 검수에 관한 사항
25. 직원 및 조교의 정원관리와 직군설폐에 관한 사항
26. 직원 인사관리 및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27. 직원의 연봉 책정 및 산정, 계약에 관한 사항
28. 직원 교육훈련계획 수립/운영 및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29. 직원의 휴가, 근태관리, 상벌, 고충처리사무에 관한 사항
30. 보훈청, 장애인관리공단 등에 관한 사항
31. 대학의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6.09.07.>

제21조(관리팀) 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2. 신·증(개)축 건축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대한 신·증(개)축의 공사계획수립 및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4. 신·증(개)축 공사 설계 검토에 대한 사항
5. 신·증(개)축 공사 시공(건축,기계,소방,전기,통신 등)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6. 신·증(개)축 건축물의 시운전에 관한 사항
7. 신·증(개)축 건축물 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신·증(개)축 건축물 공사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9. 신·증(개)축 건축물의 민원 및 하자보수 업무에 관한 사항
10. 대학 건축물 중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재난안전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학의 유지보수공사에 관한 설계 및 시공감리, 감독에 관한 사항
13. 대학의 연간 소방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위소방대 편성 및 신고, 소방훈련 계획 수립 포함)
14. 대학의 건물(구축물, 토목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보유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소방, 전기, 기계, 가스, 통신, 승강기, 냉·난방기, 오수·정화조 등)
16. 위험물 취급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난방용 등유 보관소 등)
17.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건물, 구축물(토목) 등의 구조 안전진단 등)
18. 대학의 건축물 석면관리에 관한 사항(위해성 평가 실시 등)
19. 대학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업장폐기물, 폐수, 폐약품, 의료폐기물, 음식물처리, 건설폐기물 등)
20.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및 제반 업무(종합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등)
21. 대학의 집단급식시설 제반관리에 관한 사항
22. 방사선취급 관련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방사선 촬영 실습실 해당)
23. 대학의 제반시설 안전 관리자 선임 및 법정검사에 관한 사항(소방, 전기, 보일러, 수도시설위생, 가스, 석면건축물, 연구실, 집단급식소, 위험물, 승강기 등)
24. 대학의 후생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6.09.07.>
25. 상수도 시설 제반관리에 관한 사항(수질검사, 조사 포함)
26. 대강당·연회장·운동장 등 시설운영 및 관리, 대관에 관한 사항
27. 대학의 조경시설 및 영선관리에 관한 사항
28. 대학의 환경미화, 방역관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9. 교내 정수기 수급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0. 대학의 무인경비 관리에 관한 사항(교내 출입문 열쇠 관리 포함)
31. CCTV운영관리 및 정보공개 요청의 대응에 관한 사항
32. 도로점용 허가물(도로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허가, 연장신고 등)
33. 가설건축물 제반업무(인·허가, 연장신고 등)
34. 설계 원도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교내 안내표지판 설치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호실, 층간안내, 안전시설 표지판 등)
36. 시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37. 임대차 시설의 계약요청, 임대차 비용 등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
38. 대학 시설물의 위탁관리대행 계획 수립 및 업체 계약요청에 관한 사항

39. 대학시설의 보험관련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계약요청, 보험료청구 : 사유 발생 시)
40. 시설 수리요구서 처리와 업체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5백만원 미만)
41. 물품 수리요구서 처리에 관한 사항(기자재, 비품 등)
42. 기술용역 계약 요청 및 관련 자료 협조에 관한 사항
43.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와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
44. 물품수급관리(검수 등)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45. 일반기자재, 집기·비품, 전자OA기기의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빔프로젝터, 전자교탁, 팩스, 복사기 등)
46. 삭제 <2026.09.07.>
47. 대학의 장애인 편의시설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
48. 기공식 및 준공식에 관한 사항
49. 교내・외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50. 교내・외 공간배정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교지, 교사확보율 관리 포함)
51. 대학의 경비관리에 관한 사항
52. 교내・외 공간 활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3. 학교 소유 차량 관리와 운행에 관한 사항
54. 학교복지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5. 전산기자재(컴퓨터와 프린터, 소프트웨어, 서버, 소모품, 인터넷 등)관리 및 재물조사, 감가상각, 폐기에 관한 사항<신설 2025.08.01.>
56. 전산 실습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5.08.01.>

제22조(기숙사)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기숙사 모집 안내 및 선발에 관한 사항
2. 기숙사 운영위원회(규정, 사생수칙 정비 등)에 관한 사항
3. 입・퇴사에 관한 사항
4.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시설 물품 관리,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6. 동・하계 고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숙사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장 학과

제23조(학과) 학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성적 및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
3. 학과의 수업지도에 관한 사항
4. 학과(반)의 학생지도(휴/복학. 제적. 재입학. 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학과의 강사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과의 전공실습실 및 기자재 관리

7. 학과의 전공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학과의 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과의 취업지도에 관한 사항
10. 학과의 학생회 및 학생동아리 지도에 관한 사항
11. 학과의 학생동원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2. 학과의 성과지표 분석 및 대책(취업률/충원율/장학금수혜율/전임교원확보율/중도탈락률/학생 1인당 교육비 등)
13. 학과 조교의 추천에 관한 사항
14. 학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
15. 행정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보건전문기술대학원) 보건전문기술대학원의 사무는 대학원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학과장, 센터장, 팀원은 대학원장의 결정에 따르며 보건전문기술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①(석사학위센터) 석사학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인가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후 운영여건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전문기술석사과정 질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진단에 관한 사항
9. 전문기술석사과정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타 전문기술석사과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05.01.]

제11장 부속기관

부속기관의 사무는 각 부속기관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센터장, 팀장, 팀원은 부속기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학술정보관) 학술정보관은 다음 각 항의 사무를 반영한다.

①(도서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관장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서(자료의 선정. 구입. 등록. 교환)에 관한 사항
3. 자료 정리에 관한 사항
4. 자료열람(대출/반납)에 관한 사항
5. 비 도서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시설 및 기자재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유열람실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서관홈페이지 및 학술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통계에 관한 사항
10. 교내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11.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대학기록관) 대학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관리 활용
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
4.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5. 소관 기록물의 검색 및 열람제공
6.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7.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8.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항의 사무를 반영한다.<개정 2024.10.01.>

①(평생직업교육마이스터센터) 평생직업교육마이스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신설 2025.03.01.>
1. 평생교육원 업무 조정 및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위탁)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01.>
3. 삭제 <2025.12.01.>

②(평생교육학사지원팀) 평생교육학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개정 2025.03.01.>
1. 일반과정 및 전문자격과정 개설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위탁)사업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위탁)사업 TF팀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점은행제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습자 등록 및 학위신청에 관한 사항
6. 수강생 모집 및 수료에 관한 사항
7. 평가 및 성적관리에 관한 사항
8. 교·강사 위촉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9. 실습기관협약 및 현장실습 파견에 관한 사항
10. 표준교육과정 및 교수요목 제안에 관한 사항
11. 제 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제26조(인권센터)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인권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제12장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의 사무는 단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센터장, 팀장, 팀원은 단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27조(산단기획팀) 산단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대외 재정지원사업 및 수탁연구 계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원사업의 수행계획 수립과 협의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사업의 사업효과성 분석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 예·결산에 관한 사항
6. 연구소 및 센터, 교외 연구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탁기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단, 별도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는 위탁기관은 제외한다.
10. 재무/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11.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12. 경리 관련 제반 증빙서류 관리에 관한 사항
1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
14. 기타 소득공제 등 제 세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산학협력단 위원회, 행사, 회의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5.08.01.>
17. 삭제 <2025.08.01.>
18. 삭제 <2025.08.01.>
19. 삭제 <2025.08.01.>
20. 삭제 <2025.08.01.>

제28조 삭제 <2025.08.01.>

제29조 삭제 <2024.12.23.>

제30조(보건안전교육센터) 보건안전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교직원 및 학생의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
2. 보건안전교육 관련 실습실 운영에 대한 사항
3. 재정지원 사업에 따른 관련교육에 관한 사항
4. 외부기관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5. 센터관련 교육 강사 위촉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의료시뮬레이션센터) 의료시뮬레이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의료시뮬레이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3. 센터 실습실 및 실습 물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제32조(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진행 및 사업 관계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예산의 조정 등 사업 전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 성과관리 및 공유, 확산에 관한 사항
5. 소관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운영에 부수되는 사항

제33조 삭제 <2025.08.01.>

제34조 삭제 <2025.08.01.>

제34조의2 삭제 <2025.05.01.>

제34조의3(통합 늘·돌봄 센터) 통합 늘·돌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통합 늘·돌봄 센터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2. 통합 늘·돌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 사업에 따른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센터 관련 교육 강사 위촉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통합 늘·돌봄 성과 관리 및 공유, 확산에 관한 사항
6. 통합 늘·돌봄 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센터 실습실 및 실습 물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08.01.>
8. 기타 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25.08.01.>

[본조신설 2025.05.01.]

제13장 HRD사업단

HRD사업단의 사무는 단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센터장, 팀장, 팀원은 단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5조(교육운영팀) 교육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사업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 협약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취업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생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7. 훈련비용, 강사료, 훈련생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
8. HRD-net 입력 전반에 관한 사항
9. 파트너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0.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사업 성과관리 및 성과 보고
13. 교육과정 상담 관련 사항
14. (국고)기자재 구축 및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협의회 담당

제36조 삭제 <2026.06.22.>

제37조(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지원센터)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개정 2025.08.01.>

1.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관련 부서 지원 및 사업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 협약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6.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참여학생 상담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8. 학생 및 멘토 참여수당, 참여기업 지원금, 기타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9. 센터 관련 교육 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
10. 사업 성과관리 및 성과 보고
11. 통합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청주상공회의소) 업무협의회 담당
12. 기타 사업 운영에 부수되는 사항

제14장 사업단

사업단의 사무는 단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센터장, 팀장, 팀원은 단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8조 삭제 <2025.05.01.>

제15장 삭제 <2024.11.08.>

제39조 삭제 <2024.11.08.>

제16장 글로컬사업단<신설 2024.11.08.>

글로컬사업단의 사무는 사업단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센터장, 팀장, 팀원은 단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0조(사업운영팀) 사업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글로컬대학30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2. 세부 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3.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총괄
4. 규정 및 시행지침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비 예산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 대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7. 소관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1조(HiT글로컬특화센터) HiT글로컬특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특화 사업 관련 전략 수립, 구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센터 연계 프로그램 계획 수립, 구성 등을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지역 거버넌스(지산학연관병) 구축에 관한 사항
5. 보건특화 주문식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공유·확산하는 거점센터의 역할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2조(HiT글로컬러닝센터) HiT글로컬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특화 사업 관련 전략 수립, 구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서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점검에 관한 사항
3. 현장미러형 HiT글로컬러닝센터 구축,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현장 미러형 융합실습모델 개발,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술 러닝센터 순환교육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현장 미러형 교육모델 표준화, 공유·확산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의2(L-라이프산업지원센터) L-라이프산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L-라이프산업지원센터 관련 전략 수립, 구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09.07.>
2. 글로컬사업 연계 앵커사업 전략 수립, 구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6.09.07.>
3. 실행계획서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점검에 관한 사항
4. 동네 생활 산업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 특화산업 연계 한달빛 문화·의료관광 모델 구축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현안해결 및 꿀잼도시 조성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05.01.]

제42조의3(IPE센터) IPE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다직종 연계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직종 연계교육을 위한 사례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직종 연계교육과 관련된 타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4.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08.01.]

제17장 국제교류원<신설 2025.03.01.>

국제교류원의 사무는 원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센터장, 팀원은 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3조(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국제교류에 관한 기본정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
2. 외국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국제교류 협약체결
3. 국제 홍보, 학술정보의 자료수집 및 교환
4.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
5. 학술 및 문화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교류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7. 유학생(법무부 유학생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8. 유학생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교수 및 유학생의 출입국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유학생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국어 연수과정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기타 국제교류 관련 업무 사항
13. 어학연수, 해외현장실습, 해외인턴십, 해외취업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어 특별강좌 개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5. 외국어 특별강좌의 강사 위촉 및 강의료 지급에 관한 사항
16. 교내/외 영어경시대회에 관한 사항
17. 외국어 공식시험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기타 외국어교육 관련 업무 사항
19. 외국인 유학생의 모집 및 입시에 관한 사항(9월 학기 모집 포함)<신설 2026.06.08.>

제18장 앵커사업단<신설 2025.05.01., 개정 2026.09.07.>

앵커사업단의 사무는 단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팀장, 팀원은 단장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26.09.07.>

제44조(사업운영팀) 사업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진행 및 사업 관계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예산의 조정 등 사업 전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 성과관리 및 공유, 확산에 관한 사항
5. 소관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운영에 부수되는 사항

제45조(지역기업지원센터(RIS)) 지역기업지원센터(RIS)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사업의 특화 분야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09.07.>
2. 특화 분야 브랜드 창출 및 비즈니스 모델 등 서비스 창출에 관한 사항
3. 특화 분야 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기술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학과·부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소관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등에 공용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01.>
8. 공용장비활용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01.>
9. 산학협력 공용장비 인프라 구축 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01.>
10. 공용장비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01..>
11. 그 밖의 공용장비 활용 및 산학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01.>
12. 기타 사업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01.>

[본조신설 2025.08.01.]

제46조 삭제 <2025.12.01.>

제47조(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개정 2026.09.07.>

1.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유업무 관련 외부기관 협력 및 대외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기타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12.01.]

제19장 AI·DX 사업추진단 <신설 2026.11.16.>

AI·DX사업추진단 사무는 단장이 총괄하고 그 소속의 센터장, 팀원은 단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48조(AI· DX교육지원센터) AI·DX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반영한다.

1. 사업 목표 및 계획수립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진행 및 사업 관계부서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업 및 예산의 조정 등 사업 전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 성과관리 및 공유, 확산에 관한 사항
5. AI·DX사업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운영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6.11.1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시행한 관련 사무는 이 규정의 사무분장 부서에서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장, 제5장, 제11장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제7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시행한 관련 사무는 이 규정의 사무분장 부서에서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 시행한 AI·DX사업추진단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